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를 새로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 규정(안 제4조제2항)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변경허가 시에는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으나,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예외적으로 검토주기를 새롭게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

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6조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

라 한국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배출농도의 24시간 평균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2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방류

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방류수 수질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 배출폐수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24시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24시간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 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4 제2호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3항제1호	300	500	700
더.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 환경관리인의 선임·해임·퇴직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3항제2호	300	500	700
리. 법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 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3항제3호	300	500	700
머.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	법 제47조	120	160	200

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한 사업자	제6항제4호				
--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생략) <신설>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 ----- ----- ----- ----- ----.
제36조(업무의 위탁) (생략) <신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6717